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

경

저

회

원 용

년 3 월 24 일 (수

주 간 제

12 호 •

통 권

호

법 ·

법

인

법

개

정 안

입 법

예

卫

구 독

료

월

3

0

0

0

0

안세회계법인 재경제널



eAnSe.com

온리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3/24 통권 1511호

2021/ 5/ 24 6 2 1511 ±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mark>名 표</mark>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액원광

고교의 교훈과 IMF

소득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영관리임직원 패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는 개인, 기업, 사회, 국가간의 신뢰를 창출한다(無信不立)

CFO·회계실무자·쪼세전문가 정보

-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
- 소득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 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로 연구개발활 동 지원
-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31.까지 제출 하세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
 향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용역수행에 부수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일시수령· 수익으로 받은 경우도 용역제공기간 동안에 안분하 여 익금반영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법인의업무용승용차취득 · 유지 · 운영비용의손금산입 · 불산입 판단 >

개념, 구분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금액계산, 한도 등
업무용승용차	법인의 승용차(취득, 임차, 리스 등)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정원 8명 이하의 대·중·소형 차량, 승용·전기·이륜·캠핑용 차량도 해당 - 제외(화물차, 정원 9인이상과 경차(① 1000cc 이하, ② 길이 3.6m 이하, ③ 폭 1.6m 이하)
제외업종 등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출동차량, 리스시설 대여업, 장의·운구용 차량, 임시허가 자율주행차량
감가상각비등	5년 정액법의 강제 상각제도 적용함(과대상각비만 손금불산입)
관련비용 합산 (제반유지비)	취득유지 제반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유지비, 연료비, 자동차세 등 세금공과부담금, 리스부채이자비용 등)
미사용금액 부인 (업무사용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 승용차 비용 전액이 미사용임 → 손금부인 : 승용차이용 자 상여처분
비율)	업무전용보험 가입 : 승용차비용×(1 – <u>업무사용비율</u>) : 손금부인 상여처분
OLD 110 n10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주행거리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부)	운행기록부 미작성 : 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 : 사용비율 = 100%로 봄 관련비용 1500만원 초과 : 사용비율 = 1500만원 ÷ 총비용
감가상각비 처리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초과액 : 손금불산입 유보 후 800만원 미달시 손금추인(나중 손금 인정함)
714	승용차별 임차료 등 연 800만원 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임
Y 0 =1 =1H	승용차별 처분손실 800만원 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승용 차 처분 손실	승용차별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의 이월공제 : 처분 후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 해나감
부동산임대 업 등	가족회사 등 : 승용차 비용한도 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 · 처분손실한도 800만원 → 400만원임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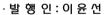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중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11 호 / 주간 12호

2021. 3. 24. (수)



· 제 작 : ㈜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02) 718-8565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①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 CEO·CFO 경영에세이
- ◎ 전단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 • • • • • • •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운영비용의 손금산입·불산입 판단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는 개인, 기업, 사회, 국가간의 신뢰를 창출한다(無信不立)	2
C E O 에 세 이	고교의 교훈과 IMF	3
세 무·회계상담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가업승계주식의 과세특례 - 상가임대사업장 토지 건물 부담부 증여시 - 공동업무중 발생한 거래처직원 상해에 대한 보상비 손금인정여부 - 외국법인 홈페이지 개발 비용 및 시스템 구축비용 원천징수 문의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건 문의	5
눈에 맞는절세미인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과 세율 - 올해부터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9 10
직장인Survival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 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서면법인-76, 2020.08.21)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 · 수량 · 단가 · 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법인-778, 2020.05.26) 	12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소규모 사업자,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내년 6월까지 가산세 면제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용역수행에 부수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일시수령·수익으로 받은 경우도 용역제공기간 동안에 안분하여 익금반영함	12
세 무 정 보	 소득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로 연구개발활동 지원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31,까지 제출하세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15 16 18 27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4

회계사인 외부회계감사는 개인, 기업, 사회, 국가간이 신뢰를 창출한다(無信不立)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 - 7575)

잠 \rightarrow 식 \rightarrow 옷 \rightarrow 교통 \rightarrow 전화 \rightarrow 거래 \rightarrow 금융 \rightarrow 회계 \oplus 의료, 소송, 부동산, 중개, 교육

직역, 항목	창조 · 창출하는 재화 · 용역, 물적자산, 가시성, 효과, 상징물
① 의, 식, 주	의류(옷), 식(농업, 축산업, 어업, 음식점), 주(건설, 건축, 설계, 토목, 도로) : 생활밀접, 가시성
② 제조, 생산, 건설	스마트폰, 승용차, 선박, 백색가전, 가구, 주택, 아파트, 사무빌딩, 도로, 항만 등 거대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③ 유통, 도·소매	상품, 제품의 유통(생산자 → 도·소매상, 온라인유통, 홈쇼핑, 중간상 → 소비자, 구매자, 판매점), 아마존·쿠팡 알리바바 등의 온라인, 홈 쇼핑
④ 금융·보험·증권	자금중개, 위험보호, 주식·채권, 각종 금융상품 중개
⑤ 정보통신·IT	격지간 정보, 사진·동영상 유통(영상통화, 영상교환), 휴대전화, 줌회의 등 각종 회의기구
⑥ 관광, 운수, 여행	사람과 물자의 장소이동, 새로운 지역 안내(여행만족), 승용차,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물적시설 필수
⑦ 의료보건업	의사, 한의사, 치과(통증, 질병, 치료), 병원, 의원, 의료기계, 예방약 등 생사여부 걸림
⑧ 변호, 법률대리	소송(민사, 형사, 가정, 행정 : 승소, 패소, 보석 등), 법원, 검찰청
⑨ 중개, 알선, 대리	구매자, 판매자 간 재화(주로 부동산 중개)의 정보제공, 안내, 협상
⑩ 회계·세무대리	내부회계인력 없이 외주용역으로 전문화 계속 유지, 상근인력의 고정급여비용절약 → 장부유지와 재무제표작성, 세금신고, 절세효과, 국세청·세무서 대응
⑪ 외부회계감사	기업의 내부회계관리 통한 장부작성·계정원장유지·재무제표 작성 (색즉시공, 외부신뢰 없음) → 독립적이고 충실한 외부감사의견 : (공즉시색) 신뢰의 탄생, 창출 (조직의 활동에 믿음의 부여) : 불특정다수인의 믿음(각 이해관계 자들의 확인대행 창출과 공익보호)

경영진코너

고교이 교훈과 IMF



이해익 원장: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유윤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지키자."

FII.A코리아의 유유수 회장과 필자의 모교인 서울고등학교의 교훈이다.

어찌보면 참 멋없는 교훈이다. 고지식하기도 하다. 핑핑 돌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하 등 도움이 안 되는 지침과 지혜 같기도 하다.

고등학교 선배인 C대학 경영학교수가 필자에게 모교 교훈에 대해 농담어린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 기억난다. 깨끗하라고 해서 적당히(?) 삥땅도 못 쳐서 가난하다. 부지런하자고 해서 삽살개처럼 뛰어 다녔지만 한탕 크게 먹을 눈이 부족해진 꼴이 되었다. 그리고 책임지키자니 억울하게 또는 자발적으로 덤테기 쓰기 일쑤여서 영 손해가 막급하다는 것이다.

또 도약하려는 뻔뻔스럼이 없어서 두목은 거의 없고 맨 참모들뿐이라는 것이다. 듣고 보니 그럴싸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냉철을 필자는 지켰다. 최근 언론계에서 크게 활약하던 고교선배는 새 시대에는 개성과 멋을 존중하는 것으로 교훈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필자를 움직이지는 못했다. 오히려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지키자."는 한 고등학교 교훈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됐다.

만약 한국 국민 모두가 교훈을 지켰더라면 IMF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머니 게임 (Money Game)에 미친듯 카지노 판처럼 되어 버린 투기적 세계자본의 횡포를 감당키는 어쨌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국인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더럽고, 뻔뻔스럽게 게으르면서 자기 몫만을 챙기려고 억지를 쓰고, 책임지키지 않는" 과거와 현재의 상당수 한국인의 나쁜 습성과 관행은 적어도 아니지 않겠는가.

기업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투명성'이다. 외국인들이 한국기업의 장부나 자료를 믿지 못한다는 불평이 극심하다. 그들만이 아니다. 심지어 자기회사의 장부조차 믿지

못하는 재벌이 존재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들릴 정도다.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투성이다. 정결하지 못하고 비리투성이다. 속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이며 어 둥이란 얘기다

한국은 유리지갑처럼 소득을 깡그리 노출 당하는 월급쟁이 외에 변호사 등 전문직과 자영 업자와 자산 소득자들이 대부분 속임수를 써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희극적인 나라다.

부지런하자. 있는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근면은 그나마 부유의 어머니다. 그리고 창조의 기회를 잡는 씨앗이다. 깨끗하고 부지런할 때 새롭고 진정한 도전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게 역사적 진실이다. 시건방지며 게으르게 되면서 제몫만 챙기려는 뻔뻔함이 너와 나 모두에게 더해진 것이 아닌가 반성해볼 일이다.

책임 지키자. 책임 경영이 화두가 된 요즘이지만 정말로 책임 지키는 꼴 한번 보기 힘들다. 이모저모로 감옥에 가는 높으신 분들의 매양 같은 소리는 '보복이고 재수가 나뻐서'이다. 그것도 툭하면 특별사면이라해서 흐지부지되는 실정이다.

D재벌 총수의 책임을 물어 퇴진 논란이 있을때 일이다. 그 재벌총수가 책임질(?) 경우는 정,재계의 높으신 분들 상당수가 줄줄이 성할 수 없다는 협박(?)을 대변하는 중요경제단체 간부가 존재하는 나라다. 이 판에 필자는 온 나라를 향해 평범하지만 삶과 모든 일에 기본이되는 모교의 교훈을 고래고래 외치고 싶다.

덧붙여 말하고자 한다. 건전한 경영이란 기기묘묘한 고등수학이 아니다. 누구나가 납득하는 평범하고 씸플(Simple) 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12일 (금)	3월 15일 (월)	3월 16일 (화)	3월 17일 (수)	3월 18일 (목)
		달		러	(USD)	1137.30	1130.70	1135. 90	1132.50	1131.80
일		본		엔	(JPY)	1047.58	1036.15	1040.82	1039.04	1039.92
캐	나	다	달	러	(CAD)	907.63	906.41	910.32	910.48	912.78
홍	콩		달	러	(HKD)	146.57	145.65	146. 29	145.84	145.74
위		안		화	(CNH)	174.84	174.50	174.61	174.29	174.04
유		로		화	(EUR)	1362.94	1351.41	1354.67	1348.13	1356.12
호	주		달	러	(AUD)	885.79	877.31	880.04	877.18	883.14
싱	가	폴	달	러	(SGD)	849.02	840.58	844.38	842.04	844.85
말	레 이	시 0	ㅏ 링 기	트	(MYR)	276.88	274.58	276. 21	275. 28	274.61

가언승계주식의 과세특례

가업승계주식의 과세특례의 경우 사후관리 조건인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고용인워의 100% 이상 유지해야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의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에는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에 해당됩니다.

상가임대사업장 토지 건물 부담부 증여시

상가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은 장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대출을 안고 증여하고자 합니다

1) 이럴 경우 사업소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아님 양도소득(부담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양도소득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건물의 경우 잔존가치)으로 해야 하는 지요?

2018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처분손익을 종합소득 (사업소득)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동업무증 발생한 거래처직원 상해에 대한 보상비 손금인정여부

회사가 거래처와 공동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래처직원과 출장(차량동승) 중 교통사고로 거래처직 원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 직원이 운전을 수행하였으며, 사고 귀책사유는 타 사고차량과 쌍방으 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거래처 직원에게 상해보상금을 일부 지급하고자 하는데, 손금인정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 는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021 \cdot 03 \cdot 24$ www.eAnSe.com 5

초 보자코너

외국번인 홈페이지 개발 비용 및 시스템 구축비용 원천장수 문의

- - 2. Software 시스템 구축비용(라이센스) 및 연간유지비용 (인력이 방문하여 구축 및 교육)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개발비용 및 연간유지비용 (인력이 방문하지는 않음)

-) 싱가폴 법인에 해외송금시 원천징수 및 세율

2. Software 시스템 구축비용(라이센스) 및 연간유지비용 (인력이 방문하여 구축

-) 미국법인에 해외송금시 원천징수 및 세율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사용료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징수 미조세조약에 따라 15%(지방소득세 별도)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워천소득이 아니므로

2. 사용료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워천징수대상이 되므로, 한 미조세조약에 따라 15%(지방소득세 별도)의 제한세율로 위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건 문의

- - 12월분 조기환급 (2기 확정) 신고시에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 1. 가산세 감면은 50% . 75% 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 당사는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고있습니다. 9월분 신고시 9월 영세율 매출 1건을 누락하여, 12월분 조기환급 (2기 확정) 신고시에 예정신고누락 1. 가산세 감면은 50%, 75% 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2. 첨부서류 작성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 9월 매출 누락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할까요? 3. 첨부서류의 기간을 그대로 2020년 12월 1일 ~ 20 1. 예정신고시 영세율매출누락분에 대해 확정신고시 됩니다. 2. 매출누락분도 영세율관련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3. 첨부서류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으 2. 첨부서류 작성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갑))
 - 3. 첨부서류의 기간을 그대로 2020년 1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로 작성하면 될까요?
 - 1. 예정신고시 영세율매출누락분에 대해 확정신고시 신고반영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감면 적용
 - 2. 매출누락부도 영세율관련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누락분을 포함시켜 작성하시면 됩니다.
 - 3. 첨부서류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게 되므로,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회계에서와는 다르게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기할부판매 등의 경우에는 특례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세무상 장기할부판매의 범위

장기할부판매란 자산을 인도한 후 그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회수하는 신용판매방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자는 즉시 자산을 인도하지만 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금 완불시까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게 되는 거래방식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양도)방식만을 장기할부판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기만 하면 월부로 하든 연부로 하든 그 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
- ② 할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할부기간은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 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경리 인코 너

장기할부판매인 손익 인식기준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명목가치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명목가치 인도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한 사업연도에 매출이익이 전액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장기할부판매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현재가치 인도기준이나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명목가치인도기준 원칙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채권을 명목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익금에.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재가치평가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수용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에 사입하다.

③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수용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양도한 경우로서 판매·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장기할부매출의 손익귀속 시기

구분	법인세법	기업회계
자기하브파매	② 특례 -이자상당액의 현재가치 수용	인도기준 - 이자상당액의 현재가치평가 적용 - 회수기일 도래기준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가능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과 세율

구분	1주택 등 중과 제외	조정대상지역	격 2주택 중과	조정대상지	역 3주택 중과
양도 시점	무관	2021년 5월까지 2021년 6월부터 2		2021년 5월까지	2021년 6월부터
세율	6~45%	16~55%	26~65%	26~65%	36~75%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6~30%)	적용 배제			

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간	1월~12월
대상	연 250만원 이상 수익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원칙	자진신고, 자진납부
신고 기간	2021년 5월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올해부터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종 전	개정
 개인 · 법인 구분 없이 누진세율 적용 (2주택 이하) 0.5~2.7% (3주택 등*) 0.6~3.2% *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법인 주택분 단일세율 개인: (2주택 이하) 0.6~3.0 (3주택 등) 1.2~6.0% 법인: (2주택 이하) 3%, (3주택 등) 6%
 개인 · 법인 구분 없이 세부담상한 적용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개인 세부담상한 인상. 법인 세부담상한 폐지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 이상) 300% (법인보유 주택) 세부담상한 폐지
 개인 · 법인 구분 없이 기본공제 6억원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개인이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 제외 * 법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합산배제 제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10~30% (장기보유 공제) 20~50% (공제 한도) 70%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 (고령자 공제) 20~40% - (장기보유 공제) 20~50% - (공제 한도) 80%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6억원씩 적용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신청 허용 1세대1주택자로 간주하여 9억원 공제 및 세 액공제 적용
•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기준 공시가격 6억원	•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기준 공시가격 상향(6 억원 → 9억원)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 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 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1 쉰게 사람을 믿는다

잘 파악하지도 못한 동료나 상사에게 많은 말을 했다가 경망스럽다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

오랜 기간 사귀거나 접하지 않은 사람은무작정 믿지 말고,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삼가야 한다.

2 안하무인의 태도

천성적으로 교만해서 동료나 상사 앞에서 고상한 척하다가 미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이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3 세 살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

친구와 절교하고 나서 반성을 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과 급속히 친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얼마 후 같은 문제로 새로 만난 친구와도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잘못된 일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지나친 욕심

욕심 때문에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한다. 스스로 정한 위대한(?) 목표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일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 면 과도한 욕심과 의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신용카드로 인한 채무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카드를 잘라버리고 현금만으로 사는 것이 좋다.

6. 과도한 표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깊은 인상은 커녕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쉬우므로 자신을 표현할 때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해야 한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용역수행에 부수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일시수령 · 수익으로 받은 경우도 용역제공기간 동안에 안분하여 익금반영화

약정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동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 부터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익금 인식방법 은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서면법인-2000, 2020.05.26

▮질 의

- ㅇ 직의내용
- 약정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SW) 구매대금을 일시에 수령한 경우 익금 인 식방법

(갑설)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 계산 (을설) 대금 수령일에 일시에 수익 인식

▮회 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일정기간 동안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용역수행과 관련된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수령(용역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의무 있음)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업하는 것입니다.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 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 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 익은 통산하지 않음

서면법인-76, 2020,08,21

▮질 의

- 질의법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할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로서
-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의 관리(추심 또는 매각 등)를 업으로 하는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함집의
- (질의1)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대부채권매입추 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실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과-0976, 2020.8.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 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240, 2020.05.25

▮질 의

- 신청인은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 는 사업자임
 - 신청인은 임차인 A와 건물을 2014.11.1부터 2021.10.31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임대 기간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준공도면 대로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도록 약정*하였음
 - * 상호합의를 거쳐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할수도 있으나 이 경우 임차인은 쌍방이 외부시공업체의 견적을 받아 합의하여 결정한원상복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부가세 별도로 20억원 이내 지급함)
 - 임차인 A는 영업부진으로 2017.3.31. 사업장을 철수하고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 B을 추천하여 임차인 B가임차권을 승계하여 신청인과 임대계약을 체결(2019.4.5.)하되
 - 임차인 B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 상회복비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질의

임대건물을 반환받으면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을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및 산입하는 경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

회 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이전

에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 는 것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

서면법인-778, 2020,05,26

▮질 의

○ 질의법인은 매월 지역의 민간단체로부터 정기 적으로 물품을 후원 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하고 있으며, 해당 민간단체는 2019년까지 기부 물품의 명세서(상품명·단가·수량·금액 기 재)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부터 총 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축하고 있음

질의내용

 지정기부금단체가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해당 기부물품의 내용(품명·수량·단가·금액)을 기 재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 는지 여부

▮회 신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⁵법인세법,제 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소규모 사업자,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 출…내년 6월까지 가산세 면제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과정에서 소규모 시업 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지려면, 일용근로자, 특수 고용직에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들이 그 지급내역, 지 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세를 일괄 하향 조정했다.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 불성실금액이 전체 지급내역의 5% 이하라면 해당 오류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용역대가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을 미제출의 경우 $1\% \rightarrow 0.25\%$, 지연제출의 경우 $0.5\% \rightarrow 0.125\%$ 로 내린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가산세를 한 시적으로 면제한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세, 경정청구로 환급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했더라도 뒤늦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3월 11일부터 국세청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자주 누락하는 연말정산 공제 유형을 소개하고, 오늘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 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제 누락한 시유로는 순전히 몰라서 빠뜨린 경우도 있었 지만,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

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

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2016년~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 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2020년 귀 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한 경우 절차적인 문제로 본격적인 환급은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달라진 공익법인 세법… 주식초과보유 의무신고제 도입

공익법인을 탈세 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 규 정이 강하됐다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신고제가 도입된 것이다.

공익법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주 5%를 초과 출연·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보유 재산가액의 30%가 계열법인 주식으로 채우는 것도 예외를 제외하고 제한된다.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은 요건 충족 여부 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적용은 올해 사업연도부터다.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3년이 지났어도 직 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이다.

출연재산 의무지출 대상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해야 한다. 적용은 올해사업연도부터이며 종교단체는 제외다.

공익법인이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에서 4개월이내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비영리법인 등은 추천신청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국세 청은 추천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제출 해야 한다.

소득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2021**. 3

-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2.26일 국회 통과)이 '21.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1.7월부터 12개 특고(예: 보험설계사, 택배기 사 등) 고용보험 적용, 일용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동 법률은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 *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②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③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 위임)인 경우 가산세 제외
-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 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동 시행령에서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 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합니다.
 - * 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금액(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임
- □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3.12~3.25, 13일)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동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교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 행정안전부, 2021. 3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 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구 분	직권 연장 대상
집합금지 업 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 소
영업제한 업 종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
 - * 직권 연장 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하기로 함
-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 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기한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20년 기준 법 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약 470억 원)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로 연구개발활동 지원

- 국세청, 2021. 2

- (개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올해부터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성실신고 를 최대한 지원하고,
 - 특히, 기업에게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주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 (본청) 일반·중견기업 사전심사 및 재심사, (지방청) 중소기업 사전심사
- (신청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Hometax),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 *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R&D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입 취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일반적으로 대량의 자금 투입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연구성패의 불확실성이 높아 연구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합으로써.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도움으로써 기업 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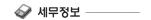
(개.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7'	亡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7	1	32,891	23,067	36,087	23,865	42,134	23,207
개인		4,749	795	5,734	867	8,012	902
법인	일반	1,535	10,140	1,519	10,813	1,453	9,658
답인	중소	26,607	12,132	28,834	12,185	32,669	12,647

- * 출처: 국세통계연보
- (세액공제액의 계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 우에
 -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되므로, 조세절감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와「지방청 전담팀」신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지방청 사전심사 전담팀」신설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도 도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지난해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Ⅰ

⑥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 2. 12〉

- 신청 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입 니다.
- (지방청 전담팀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 자 포함)에게 신속·정확한 사전심사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심사 신청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 투자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 * (본 청) 일반기업·중견기업 사전심사, 지방청 기술심사 지원
 - * (지방청)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사전심사. 중소기업 세무상담
- (사전심사 필요성) 다른 세액공제·감면제도가 대부분 기업 규모, 업종, 수입금액 등 형식적 요건만 규정하는 것과 달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질적 요건까지 부합해야 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탁월한 반면, 공제대상 비용 범위,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규정으로,
 -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 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가중되므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 받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

- (형식적 요건) 신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요건에 규정된 비용 검토
- ■(실질적 요건)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조특법 제2조 제1항 연구·인력개발 활동 정의에 부합 여부 검토

I 타 세액공제 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교 I

타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
■ 고용 관련 세액공제(급여, 근로자수)	■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
- 조특법 § 29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업에게 혜택
세액공제】	- (형식) 연구소 인증(공간, 인력)
■ 투자 관련 세액공제(<u>기업규모, 업종, 수입금액</u>)	- (실질) 연구·인력개발 활동 수행
- 조특법 § 24【통합투자세액공제】	

- * 2020.12.29. 세법개정 반영
-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주요 불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① 타사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 내용 복제 및 재현

- ☑ ◇◇◇ 검사용 부품을 개발 중이나, 해당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공개)로 타법인이 이미 개발 완료한 사항임에도,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복제하여 연구개발보고서로 제출
 -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타 업체가 이미 수행하여 결과가 공개된 연구 내용을 재현 및 복제한 활동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로 불인정

사례 ②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

☑ 연구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활동은 실패의 위험과 결과물의 소유권이 모두 위탁업체에 있 으므로, 수탁업체는 자체적 연구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사례 ③ 주주인 임원을 전담연구원으로 등록한 인건비

- ☑ 임원인 대표이사 甲(법인 주식 20.0% 보유), 상무 乙(법인 주식 11.0% 소유)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당해 법인의 주식을 10.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인건비 불인정

사례 ④ 연구전담부서로 등록하지 않은 기업에 지출한 위탁개발비

- ☑ 연구개발 과제를 연구전담부서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연구·인력개 발비 세액공제 신청
 -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에 위탁한 위탁연구개발비는 불인정

사례 ⑤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를 재료비로 계정과목 분류

- ☑ 연구소 건물 임차료에 대해 재료비로 분류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연구시설 건물의 임차료는 세액공제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
-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은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포함)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심사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o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법정 요건에 맞는 세액공제 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또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 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신청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인)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고 가능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 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ㆍ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비용)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 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서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연구개발비 명세서」,「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이 심사 절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사 관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 법인세과 사전심사 전 담팀에서 심사하고.
- 일반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에서 심사합니다.
- (구분 심사)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검토 및 비용검토로 구분 하여 심사합니다.
 - (기술 검토) 신청인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조특법」의 '연구개발', '인력개발' 정의 [참고1]에 맞는지를 기술 검토하고.
 - (비용 검토) 신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특법」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 금액이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의 구분)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 * 「조특법 시행령」 [별표 7]에 의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에서 규정한 12개 분야 223개 기술

Ⅰ「신성장·원천기술 연구	· 인력개발비 」 와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의 비교 Ⅰ
---------------	-------------	---------	-------	---------

7 🖯	정 의	비전되의	검토 기관	
- 구 분 -	;;;;;;;;;;;;;;;;;;;;;;;;;;;;;;;;;;;;;;	세정지원	비용	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당기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최 대 40% 세액공제	국세청	한국산업 기술진흥 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	· ① 당기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25% · ②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인력개발비 의 최대 50% → ①, ②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청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보다 세제상 혜택이 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심사합니다.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심사 진행 (근거규정: 「조특법 시행령」제9조 제12항)

- 사전심사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 다만,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 고,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업무처리 절차 |



(신 청 인) 내국법인 거주자

(신청대상)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정 여부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신고전 - 공제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전



(제출서류) • 연구·인력개발비사전심사신청서

•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보고서 등

(사전심사) · 비대면서면검토를 원칙으로 검토 (예외) 서류 보완 요구, 현장확인(최소화)



(결과통지) 서면으로통지(재심사신청가능)

(혜

- 택)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세무상담등 자문서비스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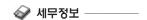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으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해 설명드 리겠습니다.
-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아 래와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 *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는 제외
- 1.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사전심사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조세절감 효과 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3.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사업자가 신고한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 **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제도
- 4. 심사 이후 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가 면제됩니다.

향후 국세청의 추진계획

6

- 향후 국세청의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청인이 이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안내코너*에 그간의 사전심사 사례(인정·불인정)를 게시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 * (접근 경로) 국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 〉법인세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안내 게시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간 이계산기를 만들고,
 -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을 통해 심사 단계별 진행사항을 안내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향후, 새로운 내용이 추가 반영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홍보 물을 배포하는 등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며,
 - 기술 검토를 위해 채용한 산업분야별 전문 기술인력 5명*을 활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기계 분야, 정보통신 분야, 전기·전자 분야, 화학 분야, 생명공학 분야
 - 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자 친화적 제도 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4-204-3923~9)

참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연구개발, 인력개발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 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인력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써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참고3]의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②+③)				
신성장·	② 30%	① 30% ②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원천기술 연구개발	(l) Min (연구개발 ^비 수입금액] × 3,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②와 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⑦ 증가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 ①				
일반	① 50%	① 40%	① 25%		
연구·인력 개발	^① 당기분 병)식: 해당 과 <i>/</i>	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①		
	© 25%	© 8%	① Min (연구개발비 × 50%, 2% 수입금액		

- ① 중소기업: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비성서 비스업 영위기업은 제외)
 - * 제조업: 8백억 \sim 1천5백억 원, 건설·도소매업: 1천억 원, 서비스업: 6백억 원 이하 등
- ②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 ③ 일반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31.까지 제출하세요

- 국세청, 2021. 2

- (출연재산 보고) 2020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결산서류 공시) 또한,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 원 미만
- (세정지원 확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 과 '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 상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 준수 등
 -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정신청 안내)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 검증강화)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 별검증을 확대하고,
 - 그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니, 세법 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 안내

- □ (출연재산 등 보고)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하며
-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제출한 내용을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대상 및 서류 |

제출의무 대상	제출할 서류
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②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법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 □ (결산서류 등 공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4.30.까지 결산 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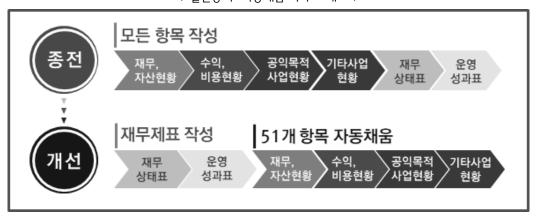
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서류 Ⅰ

구분	간편서식	표준서식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시 간편서식	2.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7.0		3.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공시		4.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대상		5.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서류		6.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7. 재무제표
		8. 감사보고서

2 공익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 □ (공시오류 예방) 공익법인이 쉽고 정확하게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 공시시 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 (오류점검) 종전에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를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공시자료를 분석 하여 오류를 수정·재공시 안내하였으나
 -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으로 표시하여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자동채움)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 되 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I 결산공시 '자동채움'서비스 개요 I



- (작성요령 동영상)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도움이 되도록 서식 작성요령과 오류 유형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 □ (비대면 안내 강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에 대한 온라 인 안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신고도움자료)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공익법인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 *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외 17종
 -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전 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대 면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 서울대 회계·재정연구센터와 협업하여 '21.2.5. 온라인 교육 실시(620명 참여)
 - (모바일 안내) 올해부터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소규모 공익법인이 기한 내 공시할 수 있도록 법인대표자에게 모바일 안내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의무이행

- □ (지정신청)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은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고시합니다.
 - * 지정신청 기한에 대해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3월 중순 공포 예정

I 공익법인 신청 및 지정기한 I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기간	'20. 10. 11. ~'21. 1. 10.	'21. 1. 11. ~4. 10.	'21. 4. 11~7. 10.	'21. 7. 11~10. 10.
지정·고시	'21. 3. 31.	'21. 6. 30.	'21. 9. 30.	'21. 12. 31.

- ☞ ('21년 지정 희망하는 경우) '21.10.10.까지 신청, 지정된 경우 '21.1.1.부터 소급적용
- 그동안 법령에 의해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으나, '21년에 새로이 기획 재정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 '18.2.13.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 단체 등
- □ (의무이행 보고) '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¹⁾ 법인세법상 의무이행²⁾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1)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3월 중순공포예정
 - 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

- □ (공익법인 검증)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계열 공익법인)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모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으며

| 주요 의무이행 검증 내용 |

출연받은 재산사용 특정법인 주식보유 이사·임직원채용 내부거래 금지 ▶ 3년미사용 ▶ 보유비율 5% 초과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 운용소득· 매각대금 ▶ 주식가액 30% 초과 이사 1/5이상초과또는 저가사용 금지 기준미달사용 ▶ 초과 보유주식 매각의무 임직원 채용 금지 ▶ 특정기업 광고홍보금지

- (비계열 공익법인)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소규모 공익법인) 그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하여 사 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세무조사)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 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

참고 1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 □ 공익법인이란 (상증법시행령 §12)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아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

| 공익사업유형 |

-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②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④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⑤ 법인세법§ 24②1호의 기부금을 받는 자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한국학교, 전문모금 기관)
- ⑥ 법인세법 시행령》 39①1호 따른 공익법인 및 소득세법 시행령》 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
- ① 법인세법 시행령§ 39①2호 다목에 따른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 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 는 사업
 -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은 ⑥ 또는 ⑦에 해당하는 자
- □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일반 비영리법인 의 경우 과세)
 - (법인세) 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 득·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비과세
- □ 성실공익법인이란 (상증법 §16 개정 전의 것)
- 공익법인 중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③ 외부회계감사 이행
-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⑥ 장부의 작성・비치
- ⑦ 특수관계인 간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 ⑧ 상증법 § 48 ⑩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 동일기업의 주식보유 제한비율 완화
 - : (일반공익법인) 5% → (성실공익법인) 10% 또는 20%
 - 계열회사 주식보유 한도 완화
 - : (일반공익법인) 총자산가액의 30%~50% → (성실공익법인) 제한없음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 참고 2

□ 납세협력의무

의무사항	관련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가산세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법 § 48 ⑤, § 78 ③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제출)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 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 미제출·불분명금 액 관련 증여세 액 x 1% (1억 원 한도)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법 § 50의3. § 78 ⑪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자산총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홈택스(www.hometax.go.kr)〉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 공시〉결산서류 등 공시 	•시정 요구(1개월 이내 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 자 산 총 액 x 0.5%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상증법 § 51, § 78 ⑤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 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 께 10년간 보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상증법 § 50②. § 78 ⑤	(대상)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 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 MAX (①,②) ① (수입금액 +출연재산) × 0.07% ② 100만원 (1억 원 한도)
외부회계감사 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법 § 50 ③, § 78 ⑤	•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 인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종교·학교법인 제외) • (제출) 감사보고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상증법 § 50의2. § 78 ⑩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기한)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변경·추가)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	• 미사용금액의 0.5% • 미신고시 MAX(①,②) ① 공익수입금액 × 0.5% ② 대상거래금액 × 0.5%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	상증법 § 50의4	• (대상)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 서 정한 회계기준 적용(의료법인, 학교법인 제외)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제출 의무	법법 § 112의2, 법법 § 75의4	• (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 85의5)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명세서 미작성 금액 × 0.2%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법법 § 120의3, 법법 § 121, 법법 § 75의8, 부법 § 54	(대상)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은 가산세 적용 제외	• 미제출한 공급가액 × 0.5%

□ 출연재산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

의무사항	관련법령	내 용	의무위반시 가산세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 ②1호, 상증령§ 38	•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시작하고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 금액, 3 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 ②(4·5호), 상증령§ 38 ④·⑦, 상증법 § 78⑨	•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 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미달 사용시 미달사용 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 48 ②3~5호, 상증령 § 38 ⑤·⑥, 상증법 § 78⑨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70%(성실공익법인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중여세 부과

주식 출연 제한	상증법 § 48①, 상증령§ 37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10%, 20%) 초과 금지	• 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주식 취득 제한	상증법 § 16②, 상증법 § 48②2호, 상증령§ 37	•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 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10%, 20%) 초과 금지	• 증여세 부과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주식 매각 의무	상증법 § 49, 상증법 § 78④	• '96. 12. 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한까지매각하여야함 - 5%~20%이하: 3년이내('99. 12. 31.) 처분 - 20% 초과: 5년이내('01. 12. 31.) 처분	가산세 부과 5% 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5%(부과기간 : 10년) 성실공익법인 등은 제외
계열주식 보유한도	상증법 § 48⑨, 상증법 § 78⑦	•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초과 금지 *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30%(50%) 초과 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성실공익법인 제외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상증법 § 48②7호, 상증법 § 78 ⑨	•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 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성실공 익법인 - 원칙 : 출연재산가액 1% 이상 - 동일주식 10% 초과 : 출연재산 가액 3% 이상	•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 10%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 48 ®, 상증법 § 78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 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 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	• 가산세 부과 기준 초과한 이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 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상증법 § 48 ⑩, 상증법 § 78 ®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 지 아니하고 광고·홍보 금지	• 가산세 부과 - 신문, 잡지 등 『 광고, 홍보 비용 - 팜플렛·입장권 등 『 행사비용 전액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 48 ③, 상증령 § 39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 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 고 사용·수익 금지	 중여세 부과 무상사용 ☎ 출연재산가액에 부과 나는 가액으로 사용 ☞ 차액이 증여가액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상증법 § 48② 8호, 상증령 § 38⑧ 2호	•출생지·직업·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증여세 부과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 산가액·이익이 증여 가액
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 48② 8호, 상증령 § 38® 1호	•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 증여세(법인세) 부과 국가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제출의무	법법§ 112 의2, 법법§ 75 의4	• (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 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 85의5)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명세서 미작성 금액 × 0.2%

참고 3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서류

□ 제출대상 및 서류 목록

구분	출연재산 보고서제출대상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대상 법인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제출 대상 서류	인서,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등을 추가제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서식 외에 세무확
제출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일반신고 〉 '공익법인 보고서제출'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제외 법인	_	 총자산가액 5억 미만이면서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등이 5%미만 출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참고 4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사전 지원

번호	신고도움서비스 내용
1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공익법인에 대한 안내
2	•종합합산부동산 보유 등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등에 미사용한 안내
3	•출연재산 3년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미달사용 안내

4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안내
(5)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안내
6	•부동산 양도 이력이 있는 공익법인에게 매각대금의 사용의무 안내
7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 하도록 안내
8	•전용계좌 미개설 공익법인에 대한 전용계좌개설·신고의무 안내
9	•폐업·해산혐의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
10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안내
11)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에 대한 공시의무 안내
12	•주식 5% 초과 보유자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요건 준수안내
(13)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안내
(14)	•총자산 대비 주식 보유비율 30% 초과법인에 대해 의무사항 안내
15)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제한 안내
16	•고가자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에 대한 안내
17)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의무 안내
18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시 성실하게 서식을 작성하도록 안내

○ (조회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 신고도움자료 확인

참고 5 주요 세법개정 내용

- □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신고제 도입
 - (개정내용)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출연·취득하거나, 계열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 등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
 -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 전	변 경
구분	성실공익법인 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16②(2)]	의무이행 여부 신고 [상속세및증여세법§ 48⑪]
개요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 년마다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 인은 요건 충족 여부를 관할 지방국
/ 35.	장에게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	세청장에게 신고

요건	① 운용소득을 80%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이사 1/5 초과 취임 금지 ④ 계열법인 광고·홍보 금지 ⑤ 외부 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비치	①~ ④ 좌동 -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 사용의 무* 추가 (* '22년 귀속부터 적용)
제재	■ (요건 미충족시)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중여세 부과	 ■ (요건 미충족시)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미신고 가산세 신설) 자산총액의 0.5%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명확화

- (개정내용)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
-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령	종 전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8②(1)	공익목적 외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 등에 미사용한 경우	(추가) 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 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출연재산 의무지출 대상 확대

- (개정내용)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
-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령	종 전	변경
상속세 및	지분율 5%(10%)를 초과하여 주식	(추가) 총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
증여세법	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액 등 3억 원 이상인 법인
§ 48@(7)	수익용 자산의 1%(3%)	- 수익용 자산의 1%

□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완화

○ (개정내용)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 령	종 전	변경
법인세법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
시행령§ 38®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월이내

* 상증법§ 50의3①2호에 따라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기한 신설
 - (개정내용) 비영리법인 등은 추천신청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은 추천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제출
 - (적용시기) '21. 1. 1. 이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법령	종 전	변 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19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절차 - (비영리→국세청) 별도 기한 없음 - (국세청→기재부) 분기 종료일 2 개월 전까지	추천신청 및 추천기한 설정 -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 □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연장
- (개정내용)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변경
- (적용시기) '21. 1. 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법 령	종 전	변 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 19, § 19의2	보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참고 6 기부금대상 공익법인(舊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과 의무이행 점검

- □ 공익법인 관리 일원화 (법인세법 시행령 § 39)
 - 공익법인 지정추천 및 의무이행 점검 기관 변경(주무관청 → 국세청)
 - * (지정추천)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의무이행)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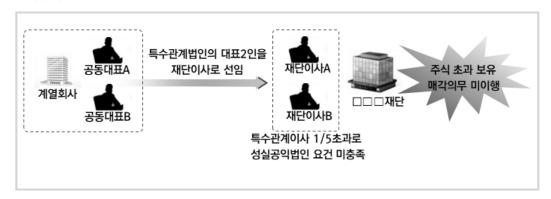
- (지정추천) '21년부터 지정 신청한 단체가 공익법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세청이 검 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
 - *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수혜자 불특정 다수, 기부금 모금 활용실적 공개 등 5개
- (의무이행 점검) 현재는 주무관청이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나, '22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직접 점검
- □ 법령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단체
 - '21년부터 지정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서 지위를 유지
 - ① 18.2.13. 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단체
 - ② 18.2.13. 전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 ③ 18.1.1. 전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의무이행 (법인세법 시행령 § 39⑤)
 - 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만 해당)
 - (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 등
 - (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 (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 등
 -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단체의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
 - ④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
 - ⑤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7)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
 - ⑧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참고 7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 주식 5% 초과 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 □ 기본사항
 - □□□재단
 - □□□□계열
-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9, § 78④
 -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96.12.31. 현재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는 경우, '99.12.31까지* 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시 5%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 * 20% 초과 보유시 '01.12.31.까지 처분
 - 단, 성실공익법인 등은 주식 기준 5%를 초과하여 보유 가능

□ 의무위반 내용



- □□□재단은 '△△년에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인 특수 관계인 이사기준 1/5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5%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보유
- □ 조치사항
 - 5% 초과 보유주식의 시가 000억 원에 대한 가산세 000억 원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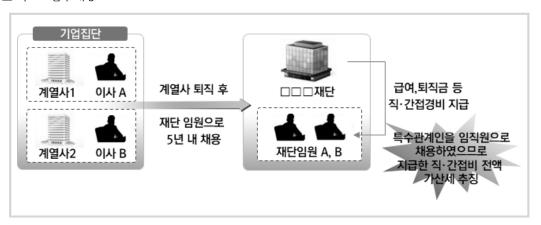
사례 2.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퇴직 이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등 직·간접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

- □ 기본사항
 - □□□재단
 - □□계열
-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8®, § 78⑥
 -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 38⑪에 따른 공익 법인의 임직원 취임 금지

※ 상증령 § 38(11)

-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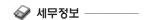
□ 주요 탈루내용



○ □□□재단은 계열사 이사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

□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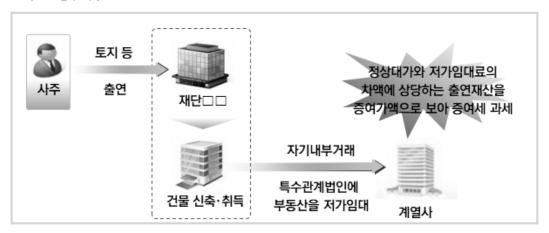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 0억 원 추징



사례 3.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에 출연받은 재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여 자기내부거래 위반

- □ 기본사항
 - 재단□□
 - □□□계열
-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8③, 같은법 시행령 § 39
 - (자기내부거래 금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 금지

□ 주요 탈루내용



- 재단□□은 출연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저가로 임대하여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 □ 조치사항
 - 정상대가와 저가임대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출연재산가액 00억 원에 대한 증여세 00억 원 추징

사학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을 상향

- 국세청, 2021. 3

- (세법개정안 통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금)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제도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 2. 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첫째,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둘째.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되었습니다.
 - * (당초) 50% → (개정)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 (세액공제 신청)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기한 |

임대료 인하 기간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
'20. 1. 1. ~'20. 12. 31.	'21년 5월(6월*)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 이내
'21. 1. 1. ~'21. 12. 31.	'22년 5월(6월*)	* (예시)12월말 법인은 다음연도 3월

-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
- (세액공제 요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붙임1 참조)
 - 특히, 임차인은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됩니다.(붙임2 참조)

-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www.semas.or.kr] 〉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배너화면)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www.sbiz.or.kr/cose/main.do)
- (전용상담망 구축)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126→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시고, 기타 상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제도 소개, 핵심가이드,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홍보물(카드뉴스,리플릿)
 - 또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혜택*도 있으니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례) 서울: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지급(30[~]100만 원) 부산: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 재산세 감면 인천: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만 원 한도) 재산세 감면

붙임 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세」 제도 (세액공제 요건)

■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 '20. 1. 1~'21. 12. 31.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 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기간 중) * 영리사업자에 한함 · 2020. 1. 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조특령 § 96의3 별표14)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년 인하분은 50%, '21년 인하분은 70%(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 금·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한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 1. 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공제배제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붙임 2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

■ 발급 필요성

- (공제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발급 방법

- (발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발급방법)
 - (온라인) ① '소상공인확인서발급' (sbiz.or.kr/cose/main.do) 또는 ②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 배너 화면 클릭하여 신청
 -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 방문하여 신청·발급

❤️ 세무정보 ───

○ (준비서류)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업종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확인) 과세표준증명원

(상시근로자수확인) 건강보험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 1357번)

■ 발급 기준(모두 충족)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 음식업, 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영리사업자 여부) 영리사업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